

|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04495       |
| 의 퇴 인  | 박성민 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 | 2024. 11. 19. |
| 추 계 번호 | 24A4125       |

#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12조(과징금의 부과)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효율향상사업의 이행결과가 절감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 대하여 절감목표량의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 에너지판매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. 다만, 제11조제7항에 따라 절감목표량 부족분을 다음 연도의 절감목표량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제1항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2  | 안 제20조(자발적 협약 체결기업의 지원 등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1.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투자에 필요한 시설자금 또는 세제 지원</li> <li>－ 2. 제23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주기 연장 또는 면제</li> <li>－ 3. 자발적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지원</li> <li>－ 4. 친환경 기업 평가와 관련한 인센티브 및 기업 홍보 지원</li> <li>－ 5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 | 재량규정 |
| 3  | 안 제22조(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)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통계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(이하 “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”라고 한다)를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3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－ 1.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주기별·실시간 에너지 사용량</li> <li>－ 2.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</li> <li>－ 3.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받은 에너지진단의 결과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4  | 안 제28조(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)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목표에너지원단위를 달성하거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표에너지원단위가 고시된 제품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4항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5  | 안 제73조(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)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히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 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등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2조(과징금의 부과)           | ○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규정으로 과징금 부과는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     |
| 2  | 안 제20조(자발적 협약 체결기업의 지원 등) | 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22조(에너지다소 비사업자의 신고 등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28조(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)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안 제73조(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)      | ○ 현재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<br>- 한국에너지공단지원(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) 2024년 2억원 |

### 2. 상세 사유

- 과징금의 부과(안 제12조 신설)는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기존 시책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규정으로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  - 안 제12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효율향상사업의 이행결과가 절감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효율향상의무공급자에 대하여 절감목표량의 부족분에 해당 연도 평균 에너지판매단가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
-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(안 제20조),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(안 제28조)의 경우 현행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
  -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“자발적 협약”<sup>1)</sup>을 한 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

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(법 제28조제1항), 개정안은 지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음

- 에너지절약형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투자에 필요한 시설자금 또는 세제 지원, 제23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진단의 주기 연장 또는 면제, 자발적 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지원, 친환경 기업 평가와 관련한 인센티브 및 기업 홍보 지원,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등
- 또한,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“목표에너지지원단위”<sup>2)</sup>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(법 제35조제2항), 개정안은 목표에너지지원단위를 달성하거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표에너지지원단위가 고시된 제품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- 참고로,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행 법 제35조제2항에 근거한 지원사업은 없음

□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(안 제22조)의 경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정보체계를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, 현행 사업계획의 법적 근거를 두는 취지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

-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,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(2023.4.1. ~ 2026.12.31.)
- “한국형 그린버튼 플랫폼 개발 및 구축”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외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
- 총사업비는 236억원 규모이며, 이 중 정부출연금은 170억원임
-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별도의 플랫폼 운영 예산(“한국형 그린버튼 플랫폼 개발 및 구축”)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(연간 10억원 규모)

□ 에너지절약 유공자 포상(안 제73조)의 경우 현재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
-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지원 사업 중 “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”(2024년 예산 2억원)을 수행하고 있음

1) “에너지사용자 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에너지의 절약과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”을 의미함(법 제28조제1항)

2) “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”을 의미함(법 제35조제1항)

□ 참고로, 현행법에 근거한 주요 재정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주요 재정사업 현황(산업통상자원부 소관)

(단위: 백만원)

|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| 2022   | 2023    | 2024예산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한국에너지공단지원(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)  | 106    | 110     | 104     |
| 전력산업홍보(전기절약홍보)           | 487    | 710     | —       |
| 전력효율향상(에너지캐시백)           | —      | 2,560   | —       |
| 한국에너지공단지원(수요관리투자사업)      | 23     | 23      | 23      |
| 에너지절약시설설치(용자)(에너지절약시설설치) | 36,969 | 263,334 | 294,575 |
| 한국에너지공단지원(자발적협약)         | —      | 366     | 466     |
| 에너지진단보조                  | 7,922  | 14,860  | —       |
| 한국에너지공단지원(에너지진단보조)       | —      | —       | 8,000   |
| 한국에너지공단지원(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기준)  | 65     | 71      | 71      |
| 한국에너지공단지원(에너지절약유공자포상)    | 218    | 218     | 218     |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

### 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추계세제총괄과 | 윤주철 | 권아영 |

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|
| 윤주철 | 02-6788-4655 | yjc@nabo.go.kr |